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57
----------	-------

발의연월일 : 2019. 8. 6.

발의자 : 전재수 · 윤준호 · 박재호

최인호 · 이종걸 · 정세균

김영춘 · 유성엽 · 이수혁

정재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9년 이전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인 전환대출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전환대출이 가능한 기간을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로 인해 전환대출이 가능하였던 2015년 5월 13일까지 전환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까지도 기존 대출 당시에 적용된 높은 금리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음.

이에 전환대출의 기회를 놓친 채무자들에 대하여 1년 동안 다시 전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3 및 제3조의3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

제33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재단은 구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전환대출을 할 수 있다.

제49조의8을 삭제한다.

제4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9(구상채권등의 매각) 재단은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구상채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구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3, 제3조의3, 제33조제6항 및 제49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u>3의2.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 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u></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4. ~ 7. (생 략)</p> <p><u>제3조의2(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u></p>	<p><u>3의3.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 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u></p> <p>4. ~ 7.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

<신 설>

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①  
~ ④ (생략)  
⑤ 재단은 구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전환대출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49조의8(구상채권등의 매각) 재단은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구상채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

제3조의3(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

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재단은 구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전환대출을 할 수 있다.

<삭 제>

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포함  
한다)에 구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다.

<신 설>

제49조의9(구상채권등의 매각) 재  
단은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  
이 상실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  
출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구상  
채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  
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  
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포함  
한다)에 구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다.